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2012. 2.

**KI 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모시는 글

임진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선택의 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세기 말의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더욱 불안해지고 사회적 위험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빈곤층이 늘고 중산층은 줄었으며, 국민 개개인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 수요는 늘고 있으며 또한 복지의 확대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지제도 역시 국가적인 자원의 배분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그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할 때 전 국민의 삶은 더욱 안전해지고 사회의 질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해 말 통과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이러한 점에서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시점에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며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디 토론에 참석하시어 선생님의 고견이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하고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 진행순서

14:00~14:10 인사말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주제발표 - 사회: 정 무 권 (한국사회정책학회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14:10~14:40 주제발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강 신 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 토 론 -

14:40~15:50 토 론

토론자

김 은 경 (경기개발연구원 전략연구센터장)

석 재 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 성 식 (중앙일보 선임기자)

안 종 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이 선 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 원 득 (국무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

권 덕 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15:50~16:00 종합토론 및 폐회



# 목 차

## 주제발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1
------------------------	---

## 〈참고자료〉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신구법조문별 비교	14
2.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38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2012. 2. 3.

강 신 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kangsw@kihasa.re.kr

## 차례

- I. 문제제기
- II. 법 개정의 주요 내용
- III. 개정 법안의 의의
- IV. 쟁점과 향후 과제

## I. 문제제기

3

### 문제제기

- 2011. 12. 29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0년부터 지속되어 오던 논의가 전면 개정 수준의 입법화로 귀결
  - 2012년 1월 26일 공포
- 이번 개정은 1996년 제정 이후 최초의 전면 개정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은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의미를 지님
  - 개정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확대
- 개정 법안에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 존재
-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 특징, 향후 시행 과정의 주요 쟁점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

4

## 주요 입법 연혁

- 1963.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보장 = 사회보험에 의한 제 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로 국한
  - 국가의 적극적 역할 부여에 유보적: 국가의 경제적 실정을 참작하여 사회보장 사업 시행, 국민의 자립정신을 조해하지 않도록..
- 1995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지자체의 책임 규정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
  - 사회보장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 사회보장 관련 타법은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기본법의 위치 명시
- 이후 2005, 2009일부 개정

5

## II. 법 개정의 주요 내용

6

## 개정이유

- 여러 부처가 사회보장 정책을 관장함에 따른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한계
- 국민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국민의 보편적, 생애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기 위함
-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제시

7

## 법의 구성상 주요 변화

- 4개 장 35개 조 → 7개 장 41개 조
- 신설 조항
  - <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중
    - 1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 19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등
  - <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신설
    - 22조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운영
    - 23조 사회서비스 보장
    - 24조 소득보장
  - <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중
    - 26조 협의 및 조정
    - 30조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 32조 사회보장 통계
  - <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중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8

## 주요 개정 내용 - 총칙

- 기본이념
  -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 조성
-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주에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 포괄
  - 서비스 제공의 내용 면에서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 돌봄, 정보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포함

9

## 총칙(계속)

- 평생사회안전망 개념 명시
  - 생애주기에 걸쳐 충족되어야 하는
  - 기본욕구와 특수 욕구를 고려하여
  -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 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격년), 공표해야
- 국민의 책임
  -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 관심, 상호 협력과 노력
  -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에 협력해야 할 의무

10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급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 국가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11

##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사회보장기본계획으로 명칭 및 위상 변경
  -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가운데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추가
  -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기본계획은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우선
-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평가 →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조항 신설
  - 광역, 기초 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의무화
  - 지역계획과 기본계획의 연계 강조

12



##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계속)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사회보장위원회로 명칭 및 위상 변화
  -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 → 심의, 조정
  - 심의, 조정의 대상 가운데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에 대한 반영 의무 신설
  - 위원회 구성원으로 교과부, 행안부, 고용부, 여성부, 국토부장관 등 명기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회 및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 설치 가능
  - 실무위원회 의결 사항을 위원장(국무총리)에게 보고할 것을 의무화
  - 복지부에 사무국 설치 조항 신설

13

##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의무화
  - 공공부조를 통한 최저생활 보장 의무화
- 사회서비스보장과 소득보장으로 구분
  -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보장
  - 사회적 위험하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소득보장
- 정책간 연계의 강조
  - 사회서비스보장과 소득보장의 균형적 연계
  - 공공부문 소득보장과 민간부문 소득보장의 효과적 연계

14

##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국가와 지자체간의 협의 및 조정 의무화 조항 신설
  -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또는 누락 방지
  -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제도의 신설, 변경시 복지부장관과 협의 의무화
- 전달체계 확충 노력 강조
  -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갖출것을 의무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달체계 연계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화
- 사회급여의 관리 조항 신설
  -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개선 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가능
- 사회보장통계 작성 및 제출 의무화

15

##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사회보장업무의 전자적 관리
  - 중앙기관, 지자체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관리 정보를 통합, 연계
  - 복지부장관이 시스템 총괄
  - 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대한 타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화
  - 개인정보보호시책마련
  - 전담기구 설치 가능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의 보유, 이용, 제공 금지

16

### III. 개정 법안의 의의

17

#### 개정 법안의 두 축

- 개정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수단, 방향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부분
  - 최저생활 보호에서 더 나아가 자립지원, 사회참여, 자아실현
  -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 생애주기적 특성에 맞는 보장, 사회서비스 보장
  - 선언적 내용 중심. 즉 법 조항의 존재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거나 법조항의 부재가 무엇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음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장치의 보완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업조정 기능 강화
  - 정보 제공의무의 강화와 정보의 통합적 관리 기능 강화
  - 통계작성의 의무화

18

## 정책 수요측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통적 소득보장제도의 한계
  - 정규직, 전일제,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제도의 한계
  - 저소득층의 소득 정체에 따라 재분배정책의 확대가 필요함과 동시에 현금급여 중심의 공공부조제도가 확대되는 데 대한 제약
- 보호해야 할 욕구와 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역할 중시
  - 남성 가구주 중심의 소득보장에서 다양한 인구집단과 욕구 대상 서비스 지원
  - 욕구간 대체가능성이 낮을 때 특히 서비스 지원의 효과 높음
  -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두로 돌봄, 양육 기능의 강조
  - 복지욕구의 확대와 복지정책의 외연 확장

19

## 공급주체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기제의 모색

- 이른바 '87년, '97년 체제 속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계기적 발전
  - 제도간 역할 부담의 불균형(예, 사회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과중한 부담)
  - 공급주체의 다변화와 조정기제의 미흡
  - 전체 복지재원의 비효율적 배분(복지급여의 집중과 사각지대) 등의 문제
- 부처간 이견, 전달체계의 미흡 등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
- 정책 조정기제의 확보, 정보화 기술의 이용, 근거 자료 생산 등을 통해 공급의 효율화 방안 모색

20

## IV. 쟁점과 향후 과제

21

### 사회보장 서비스의 보장의 개념화와 시행

- 복지욕구간에 대체관계가 약할 경우 사회서비스 보장이란 개념은 설득력이 있음
-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의 (대체/보완) 관계 설정에 대한 판단 필요
- 사회서비스 보장에 적용되는 최저선에 대한 개념화 필요
  - 소득보장의 경우 최저생계비(최저임금)등의 최저선에 대한 개념에 의존
  -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보장 역시 개인이 향유해야 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준선을 요구하게 됨
  - 사회서비스의 준거선이 개념화됨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현실적 활용도는 줄어들 수도 있음

22

## 사회보장제도간 조정의 문제

- 국가와 지자체간 협의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이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및 누락
  - ‘급여의 중복 및 누락’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관건.
  - 급여의 중복과 누락은 수급자 기준인가 공급자 기준인가 등의 문제
  - 사회보장급여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첫 단계로 각 급여들의 대상층과 목표 수급률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중앙과 지방의 관계
  - 지역계획은 기본계획에 연계되어야 하는 구조
  - 사회보장 급여의 다수가 중앙 및 지방의 재정 부담 하에 이루어지지만 제도의 설계에 대한 권한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
  - 지역 특색에 맞는, 표적화 된 정책을 설계하려는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 지역별 계획 수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방안이 동시에 모색 되어야

23

## 사회보장 정보통계의 생산과 집중 문제

- 사회보장 통계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음
  - 소득, 재산,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상태,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 및 수혜실적 등
  - 정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장통계의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음
- 행정통계와 연구목적의 통계가 갖는 차별성에 유념해야
  - 행정통계는 사회보장 급여의 잠재적 수급자에 대한 정보면에서 취약
- 통계수요의 증대에 따라 행정통계의 체계성과 정확성이 개선되고 양자간의 보완관계가 강화되어야

24

## 〈참고자료〉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신규법조문별 비교 - 14

2.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 38

## 1. 사회보장기본법 신규법조문별 비교

개정 이전	개정 이후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u>사회보장</u>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u>기여</u>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u>사회보장</u> 정책의 수립·추진과 <u>관련</u>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u>이바지</u>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u>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u>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인이 <u>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u>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u>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u>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p>	<p>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u>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u> 자립을 지원하며, <u>사회참여·자아실현에</u>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u>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u>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사회보장"이란 <u>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u>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u>빈곤을 해소</u>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u>제공되는</u> 사회보험, 공공부조, <u>사회복지서비스</u>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p> <p>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사회보장"이란 <u>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u>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u>국민 삶의 질을 향상</u>시키는데 <u>필요한</u>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u>사회서비스</u>를 말한다.</p> <p>2~3. (현행과 같음)</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p> <p>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p> <p>4. "<u>사회복지서비스</u>"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u>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u></p> <p>5. "<u>관련복지제도</u>"란 <u>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u></p> <p><u>&lt;신 설&gt;</u></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p>	<p>4. "<u>사회서비스</u>"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u>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u></p> <p>5. <u>&lt;삭 제&gt;</u></p> <p>5. "<u>평생사회안전망</u>"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b>  <u>&lt;신 설&gt;</u></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제25조(역할의 조정)</b>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p> </div>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b>제6조(국가 등과 가정)</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u>시행할 때에</u>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p>	<p>과 같음)</p> <p><b>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b>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u></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u>합리적으로 분담</u>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u>하여야 한다.</p> <p>④ <u>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u>하여야 한다.</p> <p><b>제6조(국가 등과 가정)</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u>시행할 때에</u>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제7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조(국민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p> <p>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현행과 같음)</p>
<p>제2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p>	<p>제2장 <u>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u></p>
<p>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u>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u></p>	<p>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u>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u></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p> <p><b>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b>  <u>국가는</u>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최저생계비</u>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u>최저임금법</u>」에 따른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p> <p><b>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b>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p>	<p>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p> <p><b>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b>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u>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u>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u>최저임금</u>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p> <p><b>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b>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u>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p> <p><b>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b>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타인에게</u>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p> <p><b>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b></p> <p>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u>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u></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u>최소한</u>에 그쳐야 한다.</p> <p><b>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b>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p> <p>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u>타인에게</u>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p>	<p><b>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b>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다른 사람에게</u>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p> <p><b>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b>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u>최소한의 범위</u>에 그쳐야 한다.</p> <p><b>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b></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u>다른 사람에게</u>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p>	<p>없다.</p> <p>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p>
<p>제3장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p>	<p>제3장 <u>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u></p>
<p>제20조(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이하 "장기발전방향"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u>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lt;신 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u></li> <li>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li> <li>3. <u>재원조달방안</u></li> <li>4. <u>사회보장의 전달체계</u></li> </ol>	<p>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u>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u>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u></li> <li>2. <u>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u></li> <li>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li> <li>4. <u>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u></li> <li>5. <u>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u></li> <li>6. <u>사회보장 전달체계</u></li> </ol>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p> <p>6. <u>그 밖에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p> <p>③ <u>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u> 확정한다.</p> <p><u>&lt;신 설&gt;</u></p> <p>제22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장기발전 방향을 기초로 하여</u> 사회보장과 관련된 <u>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u>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u>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보건복지부장관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u>추진실적을</u> 종합하</p>	<p>7. <u>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u></p> <p>③ <u>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u> 확정한다. <u>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u>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u>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u></p> <p>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기본계획에 따라</u> 사회보장과 관련된 <u>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u>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u>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u>추진실적을</u> 종합</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u>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u>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 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u>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u></p> <p>③ <u>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u></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제16조(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u>심의하기</u>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8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u>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u></li> <li>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li> <li>3. 사회보장제도의 <u>개선</u></li> <li>4. 사회보장제도의 <u>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u></li> <li>5. 둘 이상의 <u>부처에</u>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li> <li>6. <u>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u></li> <li>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li> </ol> <p>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p> <p>&lt;신 설&gt;</p>	<p><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u>심의·조정하기</u>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u>사회보장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조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u>기본계획</u></li> <li>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li> <li>3. 사회보장제도의 <u>평가 및 개선</u></li> <li>4. 사회보장제도의 <u>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u></li> <li>5. 둘 이상의 <u>중앙행정기관이</u>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li> <li>6. 사회보장급여 및 <u>비용 부담</u></li> <li>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li> <li>8. <u>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u></li> <li>9. <u>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u></li> <li>10. <u>사회보장통계</u></li> <li>11. <u>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u></li> <li>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u></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u>&lt;신 설&gt;</u></p> <p><b>제17조(위원회의 구성)</b></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li> <li>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li> <li>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li> <li>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li> </ol> </li> </ol>	<p><u>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 계획</li> <li>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 결과</li> </ol> <p>④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u></p> <p><b>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u>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p> <p>제1호~제2호 (현행과 같음)</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u>한다.</u></p> <p>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위원회를 <u>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u>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u>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⑦ 실무위원회에서 <u>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u></p> <p>⑧ <u>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u></p> <p>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lt; 신 설 &gt;</p>	<p><b>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b></p> <p><b>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b></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p> <p><b>제23조(사회서비스보장)</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24조(소득보장)</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b>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b></p>	<p><b>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b></p>
<p><b>제24조(운영 원칙)</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u>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u></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u>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u></p> <p><b>제25조(역할의 조정)</b>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p> <p>②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u>시</u></p>	<p><b>제25조(운영원칙)</b> ①~④ (현행과 같음)</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u>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⑤ <u>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u></p> <p><u>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u>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제26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u>유도할 수 있도록</u>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u>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u> 한다.</p> <p>1.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사업</u></p> <p>&lt;신 설&gt;</p> <p>2.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p> <p>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u>참여하는 데에</u>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p>	<p>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u>조정한다.</u></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u>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u>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p> <p>제27조(민간의 참여)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u>유도하기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u>시책을 수립·시행할 수</u> 있다.</p> <p>1. <u>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u>를 위한 각종지원 사업</p> <p>2. <u>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u>을 위한 지원사업</p> <p>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u>필요한</u> 사업</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u>참여하는 데에</u>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b>제27조(비용의 부담)</b></p> <p>①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u>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 분담에 따라</u>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p> <p>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u>부담할 수 있다.</u></p> <p>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u>사회복지서비스에</u>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p> <p>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u>사회복지서비스에</u>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 <p><b>제28조(사회보장 전달체계)</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지역적으로 고</u></p>	<p>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b>제28조(비용의 부담)</b></p> <p>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u>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u>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u>사회서비스에</u>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p> <p>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u>사회서비스에</u>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 <p><b>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모든 국민이</u></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u>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u></p> <p>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u></p> <p>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u></p> <p><u>&lt;삭 제&gt;</u></p> <p>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u></p> <p><u>&lt;삭 제&gt;</u></p> <p>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①</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p> <p><u>1.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u></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제29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lt; 신 설 &gt;</p>	<p>2. <u>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u></p> <p>3. <u>사회보장급여의 부정·오류 관리</u></p> <p>4. <u>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u></p> <p>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u></p> <p>③ <u>제2항의 전담기구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31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현행과 같음)</p> <p>제32조(사회보장통계)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u></p> <p>②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관련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u></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제30조(정보의 공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p> <p>제32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u>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3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u>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u>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p>	<p><u>라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u>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33조(정보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u>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5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u>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36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u>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에게 알려야 한다.
<제6장 신설>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p>&lt;신설&gt;</p>	<p>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제31조(비밀의 보호)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p>	<p>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내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 받은 목적의 범위내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p> <p>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lt;신 설&gt;</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p>
<p><b>제7장 보칙</b></p>	
<p>제35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39조(권리구제) (현행과 같음)</p>
<p>제21조(공청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40조(국민 등의 의견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p>
<p>제23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발전방향과 제22조에 따른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그 밖</p>	<p>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p>

개정 이전	개정 이후
<p>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b>제19조(관계 행정기관의 협력)</b>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과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관계 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p> <p><b>제23조</b>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p>	<p>및 개인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u>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① <u>(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② <u>(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보장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u></p>

## 2.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

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

여의 신청일로 본다.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사회보장 전달체계
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소득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25조(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

정할 수 있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3.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오류 관리
4.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사회보장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정보의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7장 보칙

제39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국민 등의 의견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보장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